

강원도교육청 2013년 ~ 2018년 9월 까지 처분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3	<p>「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유치원의 원장은 명령기관으로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으로, 교육행정실장은 출납기관으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84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에 원장은 도급경비명령직공무원으로, 교육행정실장은 도급경비출납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고,</p> <p>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81조(일상경비의 관리)에 따라 금융기관을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 시 통상, 송금 또는 집합 지급명령을 발행하여 지급하며, 같은 규칙 제149조(출납계산서)에 따라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명기간(분기로 하되, 최종 증명기간은 출납기간) 종료 후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63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에 따라 일상경비출납원은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함.</p> <p>또한,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 도급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8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등)에 따라 가장 가까운 금고나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도급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도급경비 사용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산호유치원에서는 2007. 3. 1.자 개원 이후 2007~2012회계연도에 유치원회계를 관리·운용하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상경비(목적사업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나 2007~2012회계연도에 도급경비 계좌에 통합·관리하였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작성 시 같은 규칙 제73조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2010~2012회계연도에 도급경비 지급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였으며, - 일상경비출납원은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를 정리·관리하여야 하나 일상경비 출납사항을 정리하면서 현금출납부는 2007~ 2012회계연도에 도급경비와 통합하여 정리하였고, 지급내역부는 2007, 2009회계연도에 미작성, 2010~2012회계연도에 도급경비 정리부 서식을 사용하여 정리하였고, -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명기간(분기로 하되, 최종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 종료 후 20일까지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07~2012회계연도에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도급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에 정리·기록하여야 하나 2007~2009회계연도에 일상경비 현금출납부에 포함하여 정리·기록하였으며, -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 도급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 상황을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7회계연도 13,756,370원, 2008회계연도 23,034,790원, 2009회계연도 18,596,280원, 2010회계연도 22,272,250원, 2011회계연도 18,789,460원의 도급경비 사용 잔액을 이월 사용하여서 강원도속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3	<p>「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제2호에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2012. 11. 1. 이전은 1천만 원 이상, 2012. 11. 1. 부터는 1천5백만 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여야 함.</p> <p>산호유치원에서는 공사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여야 함에도, 2008회계연도 ‘산호유치원 모래놀이장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 11,162,800원, 집행결의일자 : 2008. 3. 10.) 및 2012회계연도 ‘산호유치원 유원장 개선공사’ (공사예정금액 : 14,000,000원, 집행결의일자 : 2012. 10. 17.)를 집행하면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소지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제25조(교육비용 등)에 유치원의 경영자는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아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방과후학교를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함.</p> <p>산호유치원에서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09회계연도에 수익자부담으로 방과후학교 ‘신나는 체육활동’ 을 운영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 525,000원(원아 1인당 약 4,37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월 처리하여 운영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정선	정선유치원	2013	<p>2011. 9. 1. ~ 2013. 2. 28. 기간 동안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정선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설 개원한 유치원 원장으로서 그 직위의 성실상 성실하게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업무처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무단 지참을 하였으며 소속직원의 부당 업무처리에 대한 감독 소홀 등으로 기관운영의 부실과 교직원간 갈등 심화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징계	시정완료
공립	정선	정선유치원	2013	<p>2011. 9. 1. 부터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정선유치원 00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3월부터 2012. 12월까지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상습적인 무단 지참, 동료교원과의 쌍방폭행, 원장에 대한 폭언, 직장무단이탈 등으로 인해 원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징계	시정완료
공립	정선	정선유치원	2013	<p>2012. 12. 14. 09:30경 정선유치원 원무실에서 00부장 000와 교사다면평가회의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본인 감정을 참지 못하여 선배교원 000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2회 내지 3회 정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그 품위를 훼손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정선	정선유치원	2013	2011. 9. 1. ~ 2012. 12. 31. 기간 중 도급경비 지출을 하면서 품의요구서 없이 23건 21,695,780원, 지급결의서 없이 51건 19,980,910원, 채주의 청구서 등 증빙서류는 있으나 품의요구서 및 지급결의서는 없이 32건 31,370,190원, 품의요구서는 있으나 채주의 청구서 등 증빙서류 및 지급결의서 없이 3건 1,440,000원, 채주의 청구서 등 증빙서류, 품의요구서 및 지급결의서 없이 공금지급필통지서만으로 1건 28,000원 지급하여 110건 74,514,880원을 부적정 하게 지출하였고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고도 청구서류만 보관 67건 111,756,770원, 품의요구서와 청구서류 보관 33건 11,109,560원, 품의요구서는 있으나 관계 증빙서류 분실 5건 3,948,900원, 품의요구서 및 관계서류 미구비 21건 35,733,530원, 총 126건 162,548,760원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였으며, 도급경비정리부를 기록·정리하지 않았으며, 출납사무를 인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공립	강릉	경포유치원	201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8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등)에 의하면 회계연도말 현재 도급경비 사용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며, 이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 상황을 지출원에게 보고 하여야 함. 또한, 같은 규칙 제149조(출납계산서)에 따르면,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경포유치원에서는 2009~2012회계연도에 도급경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면서 도급경비 집행 상황을 지출원에게 보고 하지 않았으며,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2009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각종 보고사항을 미 이행한 사실이 있음.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공립	강릉	경포유치원	2014	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에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산편성 과목 및 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구입비는 통합 세출 원가 통계비목 비품구입비로 예산편성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경포유치원에서는 2013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예산은 수석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위해 집행하여야 하나, 교사실 교수 자료장, 냉장고 상부장·마감판 제작 등 연구활동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구입비는 비품구입비 목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운영수당 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강릉	경포유치원	2014	「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산편성 과목 및 기준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주요행사 및 각종 교육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인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목(2012년도는 통합 세출원가통계비목 일반업무추진비)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경포유치원에서는 2013회계연도에 각종 간담회 및 다과 구입 등 사업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목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3.04.11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협의회 다과 구입 등 총 8건 777,790원을 업무추진비 목이 아닌 운영비 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행정상처분-기관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삼척	삼척누리유치원	2014	<p>「강원도교육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본청 및 산하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은 평상시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직근무자(당직전담 용역업체 근무자 포함)가 상황발생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한 후(긴급상황 시는 선조치 후 보고)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고,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사본 1부를 당직함에 비치하여 비상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의 보안담당관은 당직근무자와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수립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대하여 수시 교육하고 비밀 안전지출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또한 본청 및 산하기관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별지 제18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실자는 보안점검표에 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산하 삼척누리유치원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나 2012.3.1. 개원 후 2014.5.14. 현재까지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p> <p>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별지 제18호 서식)를 비치하고 최종퇴실자로 하여금 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했어야 하나, 개원 후 현재까지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보안업체(캡스)의 보안세트 기록을 출력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시정, 기관주의	시정완료
공립	동해	해오름유치원	2014	<p>「아동복지법」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3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아동에 대한 교육)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1. 교통안전교육(2개월 1회 이상, 연간 12시간이상),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교육(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 약물오남용 예방교육(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4. 재난대비 안전교육(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5. 성폭력예방 교육(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며, 「강원도교육청 2012유아교육 운영계획」 10쪽에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별표 3의 교육기준에 의거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을 확보하여 유치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해오름유치원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강원도교육청 2012유아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1. 교통안전교육(2개월 1회 이상, 연간 12시간이상),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교육(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 약물오남용 예방교육(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4. 재난대비 안전교육(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5. 성폭력예방 교육(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간을 확보하여 유치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2학년도 안전교육 세부계획 내용이 「아동복지법시행령」의 교육기준과 맞지 않게 수립 되었으며, 유치원에서 수립한 안전교육 계획이 일일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유치원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동해	해오름유치원	2014	<p>「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의거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분류금지 및 대외비) 제3항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여 비밀에 준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9조(보안책임자의 교체)에 비밀보관 ‘정’ 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고, 인계인수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p> <p>또한, 「강원도교육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대외비 표시 및 관리)에 대외비는 비밀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세칙 제37조(비밀의 파기)에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소각, 용해 또는 세절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소멸시켜야 하며, 그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은 예고문이 도래된 사본의 경우에 한하여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해오름유치원에서는 「2011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 외 2건의 대외비 문서를 대외비관리기록부에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2012.01.01.자 인사발령으로 비밀보관책임자(정)가 교체되었음에도 인계인수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예고문에 의거 보호기간 만료로 2012. 6. 30.자 파기하여야 할 2011년도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행정지원과-3, 2011.3.8)」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동해	해오름유치원	2014	<p>「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계약제직원(비정규직) 업무 편람(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사용자(학교장)는 1년간 8월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직종에 따라 15일 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를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하고, 「초·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 제10조(결근시 보수의 감액)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보수에서 감액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 <p>해오름유치원에서는 2011년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면서 원장 ‘000’의 전 근무기간(강원유아교육진흥원 2011.01.01.~2011.02.28.)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제외월로 처리하여 연가보상비 337,020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고, - 영양사 ‘000’의 근로기간(2011.03.07.~2012.02.29.)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 산정 일수가 11일 임에도 휴가 18일을 허가·사용하였으며, 초과일수 7일 343,560원의 보수 감액없이 2012년 2월 보수를 정상지급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344천원, 환급(337천원))	시정완료
공립	정선	정선유치원	2014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정선유치원에서는 2011.09.01.자 종일제강사 000, 2011.10.04.자 교무행정보조원 000, 2011.10.24.자 조리사 000, 2011.11.04.자 영양사 000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정선	정선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정선유치원에서는 2014.03.01.자로 학급편성 변경 등의 내용으로 유치원 규칙을 개정 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하여야 함에도 규칙 개정 이후인 2014.04.17.자로 지연하여 심의 받는 등 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태백	태사랑유치원	2014	<p>“2014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책임교육과-2631(2014.02.12.)]” 에 따르면, 방과후과정 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강사요건으로, 외국인 체류자격 중 회화지도(E-2) 자격소지자의 유치원 근무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p> <p>태사랑유치원에서는, 강원도교육청 “2014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 에 따르면, 방과후과정 강사 임용 시, 외국인 체류자격 중 회화지도(E-2) 자격소지자의 유치원 근무가 불가함에도, 차일드유영어학원과 2014학년도 4~5세반 방과후과정 영어놀이반 지도활동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학원에서는 회화지도 (E-2) 자격소지자인 원어민 강사 2명을 영어놀이반을 지도하도록 하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태백	태사랑유치원	2014	<p>「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및 강원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급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주요행사 및 각종 교육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인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목(2012년도는 통합 세출 원가통계비 목 일반업무추진비)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태사랑유치원에서는, 「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주요행사 및 각종 교육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 목(2012년도는 통합 세출 원가통계 비목 일반업무추진비)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2013회계연도 10건 419,000원, 2014회계연도 3건 87,000원을 업무추진비 목이 아닌 운영비 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기관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태백	태사랑유치원	2014	<p>「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p> <p>또한, 「태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2013. 11. 15. 제정·시행) 제16조(소위원회)제1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유치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태사랑유치원에서는,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태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14. 10. 31.)까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태백	태사랑유치원	2014	<p>「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출장)에 따르면,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6년 이상인 경우 21일을 기본 부여하고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 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 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하며, 수당 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포함)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그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태사랑유치원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되고,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6년 이상인 경우 21일을 기본 부여하고 당해 연도에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 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하고,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그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장 0000은 연가사유에 해당되는 “박사과정수강”을 목적으로 강릉원주대학교에 근무지 내 출장을 실시하는 등 2012년도에 근무지 내 출장 2회, 관외 출장 12회, 총 14회 출장처리 하였으며, 2011년도 연가 실시 일수가 6일로 연가미사용에 따른 1일 가산은 불가함에도 2012년도 연가 일수에 2일을 가산하였고, 2012년도에 실시한 연가 일수는 15일(6시간 30분)이고, 개인 연가로 실시했어야 하는 14회의 출장에 대한 9일(5시간 40분)을 합산하면, 2012년도의 총 연가사용일수는 25일(4시간 10분)로, 22일의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3일은 결근으로 처리하여, 보수 담당 부서에 알려 보수가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출장으로 처리하여 보수가 348,190원 초과 지급되게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348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태백	태사랑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제25조(교육비용 등)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영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의 이용형태에 따라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침(2012.02)」 및 「2012년도 유치원 학교회계직원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술, 신체활동, 과학, 언어 등의 종일제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운영경비 및 회계 관리는 급·간식비, 기타 운영 경비 운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일제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징수 목적 및 타당성, 인근 유치원 간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실 소요액을 징수하여 학부모 자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2012년 계약제직원 처우개선 종합계획(2012.02)」에 따르면, 계약제직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존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등을 개선하고 교통보조비 등의 각종수당 신설 등을 통한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동 계획의 항목별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 학교(기관) 자체 채용 직원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태사랑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침」 등에 따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일제 특성화활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에 대한 운영경비 및 회계 관리의 급·간식비, 기타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종일제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징수 목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실 소요액을 징수하여 학부모 자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2012년 계약제직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계약제직원 항목별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 자체 채용 직원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지원하여야 함에도, “2012학년도 오후 특성화 활동 사업”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영어와 체육활동 2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자부담경비 15,09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운영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오후 특성화프로그램운영의 수익자부담경비 예산에서 1,200,000원을 자체 채용한 계약제직원(영양사, 조리원, 교무행정사 등)의 2012년 12월분 인건비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며, 2013.2.27. “방과후수업 물품 구입”으로 1,358,000원을 집행하면서, 실제 잔액 1,357,220원 보다 780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삼척	도계한빛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도계한빛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나 도계한빛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에 수료 또는 졸업한 89명의 유아 중 40명의 검진결과표만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삼척	도계한빛유치원	2015	<p>「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강원도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유치원 회계 또는 학교회계는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p> <p>도계한빛유치원은 「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2조에 따라 유치원 회계는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나, 도계한빛유치원에서는 2013-2014년 유아학비 예산의 48.88%~35.6%를 학년도말 종료시점에 지연하여 집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유아학비 예산집행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기관경고	시정완료
공립	삼척	도계한빛유치원	2015	<p>「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p> <p>도계한빛유치원은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은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계한빛유치원에서는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교직원 3명에게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260,28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260천원)	시정완료
공립	삼척	삼척누리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삼척누리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치원생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적기에 받은 후 그 결과서를 학부모가 유치원에 제출토록 안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소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2014학년도 유치원생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결과, 대상자 사랑누리반 000 외 118명 중에서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자 50명을 제외한 69명의 유치원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소에 원아 건강검진 예정시기 및 과거 검진여부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삼척	삼척누리유치원	2015	<p>2015. 3. 1.부터 원문정보 공개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가 국민에게 여과 없이 제공되므로 각급 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하여 문서가 공개되도록 조치하고 특히 학교의 경우, 위임전결 표준안(강원행복?학교 홈페이지, http://happyplus.gwe.go.kr/ 나눔마당-공통자료실-12번)을 참고하여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고, 정비된 위임전결사항을 준수하여 문서를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으며[지식정보과-2011 (2015.2.24.)], 강원도교육청 학교혁신과-2875(2015.2.16.)호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따라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무업무전담팀 구성하고 위임전결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고 시행되어 있다.</p> <p>삼척누리유치원에서는 전체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무업무전담팀 구성하고 위임전결표준안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야 함에도, 교무업무전담팀을 구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감은 2015.3.3.에 표준안을 참고하지 않고 교무실업무만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행정실장은 감사일 현재(2015.4.17.)까지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시정	시정완료
공립	삼척	삼척누리유치원	2015	<p>「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및 강원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급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주요행사 및 각종 교육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인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목으로(2012년도는 통합 세출 원가통계비목 일반업무추진비) 예산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삼척누리유치원에서는 2013~2014회계연도에 각종 간담회 경비 및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목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3회계연도 ‘201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2학기 교육과정운영 협의회 석식대금’ 등 2건 316,000원, 2014회계연도 6건 547,250원을 업무추진비 목이 아닌 일반수용비 목 등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기관주의	시정완료
공립	삼척	삼척누리유치원	2015	<p>「강원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2013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삼척누리유치원에서는 목적경비 집행 잔액은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3회계연도의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금 400,000원, 특수학급 교과활동비 2,383,905원 등 총 2,783,905원의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2014. 2. 24.에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료에 명시이월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6	<p>「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 건축물의 취급에 관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에 책임을 지며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p> <p>그러나 산호유치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 매월 학교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 점검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6.1.6.(수) 04:05경 급식소 내부 칼·도마살균소독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200,000원 상당의 교육재산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공립	강릉	솔향유치원	2017	2017.1.3. 원아가 유치원 자동문과 바닥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부분절상되었고 학부모가 원장 000 및 교사 000을 민형사상 고소한 사안이며, 형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교사 000 및 원장 000가 벌금 3백만원 확정됨	신분상처분-경징계	징계 진행중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산호유치원에서는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6학년도에 수료 또는 졸업한 110명의 유아 중 73명의 건강검진 결과표만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7	<p>「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및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시 안전사고예방(학교정책과-12319, 2012.05.29.)」에 의거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통안전공단에 차량보험 및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운전자 적격여부와 현장체험학습 여행 버스에 대한 차량연식, 보험가입여부(배차된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를 확인하여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학습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p> <p>산호유치원에서는 2013.08.20.자 2013 여름방학중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반 생태박물관 현장 체험학습 버스임차용역 계약외 3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안전공단에 학생안전을 확인할 차량에 대한 각종 정보(차량연식, 운전자 적격여부, 보험가입여부 등)를 사전에 확인 및 구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7	<p>「강원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및 강원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기침」에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급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주요행사 및 각종 교육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인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목으로(2012년도 통합 세출원가통계비목 일반업무추진비) 예산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산호유치원에서는 2013~2014회계연도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담회성 경비(간담회, 다과)는 업무추진비 목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3. 12. 12.일자 '2014학년도 신입원아 초청 시 학부모 다과구입' 48,000원 등 2013회계연도 5건 632,400원, 2014회계연도 7건 1,155,740원, 총 12건 1,788,140원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교육운영비 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기관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7	<p>「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및 「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급 초·중등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하며,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인행위를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산호유치원에서는 2016회계연도 학교회계를 집행하면서 ‘확장형 돌봄교실 청소기 구입(카드결제)’ 1건 219,000원을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지출인행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7	<p>「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 <p>산호유치원에서는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관용차량(학교 통학버스)을 이용한 학생인솔 업무 출장 건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13년도에 7건 384,000원, 2014년도에 8건 497,000원 총 88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881천원)	시정완료
공립	속초양양	산호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와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자격)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교행정업무편람(발행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선출 절차를 안내하면서 신원조회 실시 시기를 학부모위원의 경우 선거공보 전에, 지역위원의 경우 당선자 공고 전까지 팩스, 행정전산망, 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본적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p> <p>또한,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제1항 3호의 규정은 “학교운영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3조(위원의선출 등) 제2항의 규정은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p> <p>산호유치원에서는 2014년도와 2015년도 또한 2017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출하면서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학부모위원 ○○○외 2명과 2015년도 학부모위원 ○○○ 및 2017년도 학부모위원 ○○○외 1명에 대하여 신원조회 회신서 회신 전 당선자 확정하였고, 2016학년도 학부모위원 ○○○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여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강릉	경포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경포유치원에서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2015년도 〇〇〇 외 46명, 2016년도 〇〇〇 외 27명의 재학 중인 전체 원아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모두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영유아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재심의신청
공립	강릉	경포유치원	2018	<p>「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라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교원은 동 연수를 임법 취지에 맞도록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경포유치원에서는 2017년에 교사 〇〇〇는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목적과 다르게 ‘시부모님 병원 정기검진 동행’의 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강릉	경포유치원	2018	<p>「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특별휴가)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6조(연가 계획 및 허가) 제5항에 따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p> <p>경포유치원에서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사무운영7급 〇〇〇 외 1명은 특별휴가의 사유가 아님에도 ‘시누이 남편 사망’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급여업무 담당자는 특별휴가의 사유가 아닌 특별휴가 사용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특별휴가 사유가 아닌 특별휴가 사용일수에 대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산출하여 각각 98,990원과 67,29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67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강릉	경포유치원	2018	<p>「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2조(병가) 제1항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직종별 일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30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p> <p>「강원도교육청 계약제직원 업무편람」 III. 계약제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따르면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6일을 초과하여도 계속 병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9조(연차유급휴가) 제4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1일분 통상임금을 미사용 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7조(결근시 보수의 감액) 제2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서 기본급 및 제수당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수에서 감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경포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 및 2016학년도에 방과후교육사 ○○○ 외 1명은 연간누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실시하였으나 7일 이후의 병가를 신청하면서 연가를 활용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병가를 신청하여 ‘병가(병조퇴 등)사용 내역’ 과 같이 사용한 사실이 있고, 급여업무 담당자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간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2014학년도 및 2016학년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병가일수에 대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산출하여 각 각 331,200원과 65,770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397천원)	시정완료
공립	강릉	경포유치원	2018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p> <p>경포유치원에서는 2015회계연도에 ‘경포유치원 출입문 교체공사’ 건물(주○○○○ 대표 ○○○(강릉시 ○○ ○○○○○○))과 계약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20,227,270원)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체결했어야 하나, 수의계약 사유 및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1인 수의계약(계약금액 20,000,000원, 계약일 2015.11.18.)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동해	해오름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동법 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22조의5(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공립	동해	해오름유치원	2018	<p>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는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품의 후, 가격 비교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원인행위 하며,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 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해당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주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p> <p>해오름유치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는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인센티브(포인트 46,695점, 2018. 5. 24 기준)를 2016. 4. 23.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태백	태사랑유치원	2018	<p>「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34조~제35조,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제22조」,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17687(2012.10.31.)공문 및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장은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시기에 맞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원감만 당연직이며 위원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11월 30일에 종료하여야 한다.</p> <p>태사랑유치원에서는 태사랑유치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규정[태사랑유치원-1592(2018.03.19.)]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서 교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으며 제5조(위원의 임기)에서 당해연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시정	시정완료
공립	태백	태사랑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하며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태사랑유치원에서는 2015회계연도에 '2월 우유 구입비 지급' 등 2015회계연도 20건 12,619,340원을 회계연도가 종료한 시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공립	태백	태사랑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및 제18조(지도·감독)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르면 유치원규칙에는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그러나, 태사랑유치원에서는 유치원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재입학, 편입학 및 휴학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6장 제17조에는 수료 및 졸업에 대한 세부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유치원규칙 제·개정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행정상처분-시정	시정완료